

1. 개정이유

구직 신청 시 신청인의 신원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고급·전문인력의 범위를 정비하고, 반복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직 신청 시 신청인의 신원확인 방법 개선(안 제2조)

구직신청 시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대신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편리하게 개선함.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첨부서류 정비(안 제17조 및 별지 제8호의2서식)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을 규정함.

다.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별로 고용하여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중 공무원, 교사, 노동조합의 업무 경력자 등 직업소개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도록 정비함.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변경등록 의무사항 변경(안 제22조)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급·전문인력에 한정된 직업소개사업의 여부 또는 사업장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을 규정함.

마. 구인·구직신청서 서식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6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일정 기간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구인·구직신청서의 서식은 필수항목 포함 시,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연령 표기 규정 정비(안 제41조의3)

행정에 관한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행정기본법」을 고려하여 나이에 관한 표현을 정비함.

사. 규제 재검토 규정 정비(안 제48조)

‘지도단속 및 보고’의 존속사유가 명백하고 계속적인 규제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몰해제 함.

아. 고급·전문인력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을 대신하여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고급·전문인력의 범위를 현행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현행화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종(국회의원,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등) 등은 제외

하여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별표 1의2)

-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선택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칭, 전화번호, 등록번호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2)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등록증, 요금표, 직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중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여야 함을 규정함.

차. 반복된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2)

- 1)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의 부과 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 2)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로 개설한 경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처분을 부과함을 규정함.
- 3)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가 고급·전문인력이 아닌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한 경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처분을 부과함을 규정함.
- 4) 직업안정법 제26조 개정(겸업금지 준수 의무자 확대)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을 사업자, 법인의 임원, 종사자로 확대함

카.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제2호의2서식, 제2호의3서식, 제7호서식, 제8호의2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제20호서식, 제43호서식)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별지 서식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직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를 “구직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구직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구직자 중 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사람은 관계공무원에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영 제21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 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제19조제2호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5호 및 제7호
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 라. 노동조합 또는 사업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상담, 직업지
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나.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사람

제22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고급·전문인력 직종에 한정된 직업소개 여부
- 8. 사업장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영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고급
·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만 해당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제1항제2호 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 접수 일자,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근로자수, 주소, 모집직종, 모집인원, 직무내용, 임금, 근무시간, 근무장소, 퇴직급여, 고용형태

3.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내용,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직종, 근무지역, 희망임금, 고용형태, 근무가능시간

제41조의3제3항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48조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의2 제13호 중 “간판”을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으로,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을 “명칭, 전화번호 및 등록번호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4호에도 불구하고 영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부착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가. 등록증

나. 요금표

다.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직원명단

별표 2 제1호나목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에 따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영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로 개설 또는 폐쇄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	-------------	------

별표 2 제2호가목7) 위반사항란 7) 중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를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종사자”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6)중 마)부터 아)까지를 바)부터 자)까지로 하고, 같은
목 16)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영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고 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 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가 고급·전문인력이 아닌 구 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	-------------	------

별표 2 제2호가목16)중 자) 및 차)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6)중 차) 및 카)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직업소개소 내부에 등록증·요금 표 등을 붙이지 않은 경우 및 영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고급 ·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증·요금 표 등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	경 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카) 간판에 사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 우	경 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7호서식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중 “허가관청담당자확인”을 “등록·신고 관청 담당자 확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으로 본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

고급 · 전문인력(제18조의2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고급관리자 및 전문가 직종 해당자	비고
112	기업 고위 임원	
121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122	마케팅 및 광고 · 홍보 관리자	
131	연구 · 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연구 관리자(1311), 교육관리자(1312), 경찰 관리자(13132), 소방 관리자(13133), 교도 관리자(13134)는 제외한다.
132	보험 및 금융 관리자	
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134	문화 · 예술 관련 관리자	
135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139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141	건설 ·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49	기타 건설 ·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51	판매 및 운송 관리자	
152	고객 서비스 관리자	
153	환경 ·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59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11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212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213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23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224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225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231	건축 ·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3	금속 · 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4	전기 · 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5	기계 · 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6	소방 · 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고급관리자 및 전문가 직종 해당자	비고
237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	
238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1	의료 진료 전문가	
242	약사 및 한약사	
251	대학교수 및 강사	대학 시간강사(2512)는 제외한다.
261	법률 전문가	판사 및 검사(2611)는 제외한다.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3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274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28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284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285	디자이너	
286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287	식문화 관련 전문가	
288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및 매니저	

<비고>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에 따른 것임.

구직신청서(상용직용)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담당자 작성란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1 일)

☐ 다음 사항을 읽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신청서 최초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 및 국외 취업희망자는 예외)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구직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직등록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신청한 기관이나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구직 마감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원활한 취업알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합한 구직자의 알선을 위해 다른 기관(시스템)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제공기간: 신청자의 구직신청 유효기간).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그 밖의 취업지원 기관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자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급여 등 수급 이력, 직업훈련 이력, 자격정보 및 지원받은 각종 고용서비스 내용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워크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제공기간: 구직신청일부터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비공개 사유: _____)

※ 예) 이름, 성별, 나이, 직종, 희망임금, 희망근무지역, 경력, 학력 등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 취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일용근로를 희망하는지 여부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2. 구직신청의 목적(이유)

☐ 취업알선 ☐ 구직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직업훈련 ☐ 기타(_____)

3. 취업알선 희망시기 ☐ 즉시 ☐ 대기 기간 필요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 다음날부터 취업알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취업희망품 가입 동의 여부(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및 도서지역거주자만 해당합니다)

동의(☐ 여성가장 ☐ 중증장애인 ☐ 섬 지역 거주자 ☐ 희망하지 않음)

※ 취업희망품에 가입하여 고용센터 등의 구직알선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희망자는 가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비동의하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함)

6.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 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희망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합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210 mm × 297 mm [백상지(80 g/m²) 또는 중질지(80 g/m²)]

□ 필수 작성 사항

(뒤쪽)

※ 아래의 사항은 모두 적고,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현 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알림수신 설정 [] 전자우편 [] 문자 서비스		
학력사항	최종학력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
	[] 졸업(예정) [] 수료 [] 재학 [] 휴학 [] 종퇴 [] 검정고시 [] 무학			
희망취업조건	직종명	희망입사형태 (경력기간)		희망 세부 직무내용
	희망직종	[] 신입 [] 경력 (년 개월)		
		[] 신입 [] 경력 (년 개월)		
		[] 신입 [] 경력 (년 개월)		
	근무지역	1순위 ()시·도 ()구·군 2순위 ()시·도 ()구·군 [] 지역무관		
희망임금	[] 연봉 [] 월급 [] 일급 [] 시급 ()원 이상 [] 면접 후 결정 가능			
고용형태 (복수선택 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시간(선택)제	
	[] 교대제 근무 [] 파견근로 [] 대체 인력* [] 관계 없음		[] 재택근무 희망	
	* 출산휴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을 말합니다.			
	근무가능(희망)시간	(: ~ :), (: ~ :)		

□ 선택 작성 사항

※ 아래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적고,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구직정보 추가확인 사항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년 월 ~ 년 월	
	보유자격 (면허)	(년 월 일 취득, 발급기관:)				
		(년 월 일 취득, 발급기관:)				
	교육훈련 이수현황	훈련 과정명	훈련기간	세부훈련내용	훈련기관명	
			년 월 ~ 년 월			
	전산 활용능력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레젠테이션			운전 능력	[] 운전면허증 [] 차량 소지자
		[] 회계프로그램 [] 기타()				
	외국어 능력	외국어명	수준	공인시험 명칭	응시일	등급·점수
			[] 상 [] 중 [] 하		년 월 일	급(점)
병역대체 근무희망	[]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		[] 전문연구요원	국외취업 희망여부	[] 희망	
	[] 산업기능요원 [] 보충역 대상자					
※ 그 밖의 희망사항(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통근버스 운영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구직신청서(일용직용)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담당자 작성란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1 일)

☐ 다음 사항을 읽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신청서 최초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 및 국외 취업희망자는 예외)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구직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직등록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신청한 기관에 연락하여 구직 마감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취업알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합한 구인자의 알선을 위해 다른 기관(시스템)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제공기간: 신청자의 구직신청 유효기간).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그 밖의 취업지원 기관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조차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자의 구조정보,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급여 등 수급 이력, 직업훈련 이력, 자격정보 및 지원받은 각종 고용서비스 내용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워크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제공기간: 구직신청일부터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비공개 사유:)

※ 예) 이름, 성별, 나이, 직종, 희망임금, 희망근무지역, 경력, 학력 등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4.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비동의하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함)

5.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 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희망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합니다.

이
고
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210 mm × 297 mm [백상지(80 g/m²) 또는 중질지(80 g/m²)]

□ 구직신청 정보

(뒤쪽)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현 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알림수신 설정 ☐ 전자우편 ☐ 문자 서비스	

희 망 취 업 조 건	희망직종	직종명	희망입사형태	(경력기간)
			☐ 신입 ☐ 경력	(년 개월)
		☐ 신입 ☐ 경력	(년 개월)	
근무지역	1순위 ()시·도 ()구·군 ☐ 지역무관 2순위 ()시·도 ()구·군 ☐ 재택근무			
희망임금	☐ 연봉 ☐ 월급 ☐ 일급 ☐ 시급 ()원 이상 ☐ 면접 후 결정 가능			

기 타 사 항	※ 그 밖의 희망사항(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통근버스 운영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구직신청서(장애인용)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담당자 작성란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1 일)

☐ 다음 사항을 읽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신청서 최초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 및 국외 취업희망자는 예외)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구직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직등록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신청한 기관이나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구직 마감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원활한 취업알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합한 구인자의 알선을 위해 다른 기관(시스템)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제공기간: 신청자의 구직신청 유효기간).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그 밖의 취업지원 기관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자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급여 등 수급 이력, 직업훈련 이력, 자격정보 및 지원받은 각종 고용서비스 내용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워크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여부
(제공기간: 구직신청일부터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비공개 사유: _____)
※ 예) 이름, 성별, 나이, 직종, 희망임금, 희망근무지역, 경력, 학력 등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 취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일용근로를 희망하는지 여부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2. 구직신청의 목적(이유)
[] 취업알선 [] 구직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직업훈련 [] 기타()
3. 취업알선 희망시기 [] 즉시 [] 대기 기간 필요 (년 월 일까지)
※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 다음날부터 취업알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취업희망풀 가입 동의 여부(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및 도서지역거주자만 해당합니다)
동의([] 여성가장 [] 중증장애인 [] 섬 지역 거주자 [] 희망하지 않음)
※ 취업희망풀에 가입하여 고용센터 등의 구직알선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희망자는 가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비동의 (비동의하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함)
6.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 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희망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전기관의 장 귀하

210 mm × 297 mm [백상지(80 g/m²) 또는 중질지(80 g/m²)]

※ 그 밖의 희망사항(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통근버스 운영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국내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① 법인 또는 단체명		② 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③ 직업소개분야 대표자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임원 성명		⑥ 임원 주민등록번호		
⑦ 사업소 소재지				
⑧-1 일반전화번호		⑧-2 휴대전화번호		
⑧-3 팩스번호		⑨ 직업상담원		
⑧-4 이메일주소				
⑩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⑪ 사무실전용면적				
⑫ 주 소개직종	1) 2) 3)			
⑬ 사업소 종사자 수				
⑭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 여부	[] 해당(홈페이지주소 :) [] 비해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유의사항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위하여 행하는 직업소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4. ⑨ 직업상담원란은 신고대상 무료직업소개사업소에 자격있는 직업상담원이 근무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5. 「직업안정법」 제26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인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추고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만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의 **신고서의 작성은 사업소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직업소개를 하면서 사무실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 작성			
사업소명			
업무담당자 연락처			
주 소개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기준)	1. 2. 3.		
종사자수	총 명 (직업상담원: 명, 일반종사자: 명)		
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명)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기간			
월평균 직업소개 계획	구직자	구인자	취업 인원
	명	명	명
사업운영 세부계획			

작 성 방 법

본 사업계획서는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직업소개를 하면서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적정하게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등록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1.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직업소개 업무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2. 주 소개직종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1 「고급·전문인력」의 한국표준직업분류(소분류)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법률전문가, 기업고위 임원,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3. **사업운영 세부계획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운영 세부계획**
 - ※ 직업소개소 운영의 전반적인 계획, 사무실을 갖추지 않음에도 구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방법, 직업안정법령 준수 내용 등을 반드시 포함
 - 나. **소개요금 징구 방법**(예시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 모두 등)
 - 다.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부작성 및 보관 방법**(예시 전자문서로 장부를 작성하고, 웹상에 저장하여 점검 시 제출 등)
 - 라. **점검 수행 방법**(예시 소재지에서 담당공무원과 대면으로 점검 수행, 담당 관할 관서에 출석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장부 제출 등)
 - 마. **고급·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구직자 및 구인처 발굴 및 홍보 방법**(예시 온·오프라인으로 사업소 홍보 통해 구직자 및 구인자 확보 등)
 - 바. 법령상 게시 의무 **부착물(등록증, 요금표, 직원명단)의 홈페이지 게시 등**
4.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번호(등록번호) :

☐ 무료	☐ 주된사업소	☐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 유료	☐ 기타사업소	☐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 개인	☒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고급·전문인력 직종 한정)

1. 직업소개소 명칭:
2. 직업소개사업소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생년월일: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위와 같이
신고(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 무료 ☐ 유료]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①신 고 · 등 록 관 청			②신 고 · 등 록 번 호	
직 업 소개소	③명 칭		④최초신고·등록일 자	
	⑤소 재 지		⑥전 화 번 호	
	⑦대 표 자 성 명		⑧주 민 등 록 번 호	
직업상담원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일반종사자	⑪성 명			
	⑫주민등록번호			
임 원	⑬성 명			
	⑭주민등록번호			
⑮고급·전문인력 직종 한정 여부		[] 해당	[] 비해당	
⑯신고·등록사항 변경내용				

※ 신고·등록번호는 신고·등록관청 뒤에 “무” 또는 “유”자를 부여한 후 신고·등록연도 및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무료 및 유료의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가 둘 이상인 경우는 사업소별로 작성합니다.

※ ⑦란의 대표자 성명은 신고(등록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⑨~⑫란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⑯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일
------	-----	-----	------	----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직업소개 사업소	명칭		사업소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홈페이지 주소(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경우 기재)				

재발급사유	[] 훼손	신고확인증(등록증) 첨부		
	[] 분실	분실일자	년	월 일
		분실사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확인증(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확인증(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확인증(등록증)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홈페이지 주소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직업상담원				
	사업소	동산	원		
	자산상황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홈페이지 주소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 업분류코드)	1)		()	
		2)		()	
		3)		()	
	고급·전문인력 직종 한정 여부	[]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 기재 생략 가능, 홈페이지 주소 반드시 기재) [] 비해당			
	검업내용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해당(홈페이지주소)				
	[] 비해당				
분 사무소	갯	수	지역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단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2 서식의 사업계획서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수수료 신규(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 으로 한정한다) : 3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갖추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개 직종을 고급·전문인력으로 한정하는 사업에 해당함을 표시하고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사항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고급·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구직자만 구인자에게 소개하여야 합니다.
3.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 고급·전문인력 직종 한정 소개 여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변경·추가·폐쇄의 경우)*

* 시행령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고급·전문인력 직종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만 해당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에 신청서는 사업소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종 사 자 명 부

※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도 이 서식에 적습니다.

직책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	담당 업무	학력	주요 경력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자격증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직원명단

우리 직업소개소의 종사직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명단과 종사직원의 이름표를 대조한 후 상담에 응하십시오.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직업상담을 하지 마십시오.

사진	직위 및 담당	성명	등록·신고 관청 담당자확인
3cm×4cm			

※ "직위 및 담당"란은 대표자, 직업상담원, 일반 종사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57mm×364mm 이상
(보존용지(1종) 70g/m²)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인·구직 신청의 수리 등) ① 구인자가 구인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구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구직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구인·구직 신청의 수리 등) ① ----- ----- ----- ----- ----- ----- ----- ----- ----- ----- <u>구직신청서를</u>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구직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구직자 중 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사람은 관계공무원에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

1. (생 략)
<신 설>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
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
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들
을 이상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
성하여야 한다.

1. (생략)

<신 설>

② ~ ⑤ (생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①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영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한다.)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 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신 설>

<신 설>

<신 설>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
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
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 제

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
발훈련시설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
교

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
른 청소년단체

라. 노동조합 또는 사업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
무원

나.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
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삭 제>

<삭 제>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u>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u> <u>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u> <u>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u> <u>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u> <u>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u> 8. <u>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u> <u>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u> <u>사람</u>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u>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u>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 항의 변경) ① 유료직업소개사 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② ~ ④ (생략)	<삭제> <삭제> <삭제>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 항의 변경) ①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고급·전문인력 직종에 한정</u> <u>한 직업소개 여부</u> 8. <u>사업장 명의를 인터넷 홈페</u> <u>이지(영 제21조제5항 단서에</u> <u>따라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u> <u>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u> <u>업자만 해당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
부 비치)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 및 서류
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
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5
호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1. (생 략)

<신 설>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
부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1항제2호 부터 제
5호까지-----

-----.

1.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
서: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
접수 일자,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근로자
수, 주소, 모집직종, 모집인원,
직무내용, 임금, 근무시간, 퇴
직급여, 근무장소, 고용형태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
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내용,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직종,
근무지역, 희망임금, 고용형

2. (생략) 제41조의3(실연심사위원회) ①· ② (생략) ③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선발일 현재 <u>만 20세</u>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실연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공급대상 연예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삭제 3. ~ 5. (생략) 6. 제29조에 따른 지도단속 및 <u>보고: 2016년 1월 1일</u> 7. ~ 9. (생략)	<u>태, 근무가능시간</u> 4.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1조의3(실연심사위원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u>20세</u> ----- ----- -----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3.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7. ~ 9. (현행과 같음)
--	--

현행	개정안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1의2] <u>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u>(제18조의2제2항 관련) 13. <u>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u> 14. (생략) <u><신설></u>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1의2] <u>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u>(제18조의2제2항 관련) 13. <u>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u> 14. (현행과 같음) 15. <u>제14호에도 불구하고 영제 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부착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중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여야 한다.</u> <u>가. 등록증</u> <u>나. 요금표</u> <u>다.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직원명단</u>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u>행정처분기준</u>(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u>행정처분기준</u>(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

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
용한다.

다. ~ 마. (생 략)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 1) 법 제18조제1항 후단 및 법 제
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
고·변경등록 규정을 위반한 경
우

<신 설>

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에 따라 적용한
다.

1)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
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
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
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
로 한다.

다. ~ 마.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 1) 법 제18조제1항 후단 및 법 제
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
고·변경등록 규정을 위반한 경
우

사) 영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
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

7) <u>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u> 법 제26조에 따른 겸업 금지 의 무를 위반한 경우 1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 25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 한 경우 <u><신 설></u> 마) ~ 아) 생략 자) 직업소개소 내부에 등록증·요 금표 등을 붙이지 않은 경우 차) 간판에 <u>직업안정기관의 장,</u>	<u>주소를 변경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로 개설 또는 폐쇄한 경우</u> 7) <u>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u> (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u>중사자가</u> 법 제26조에 따른 겸 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 25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 한 경우 마) 영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u>고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 한 자가 고급·전문인력이 아닌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한 경 우</u> 바) ~ 자) (현행 마) ~아) 와 같 음) 차) 직업소개소 내부에 등록증·요 금표 등을 붙이지 않은 경우 및 영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고 급·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 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 증·요금표 등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 카) 간판에 <u>사업소의 명칭, 전</u>
--	---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u>	<u>화번호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393